

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**■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**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10월 12일(토) ~ 10월 17일(목) 09:00~17:00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견본주택 방문 접수
견본주택 위치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78-1번지(대표번호: 033-731-002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첨자의 청약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생애최초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신분증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 /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/대리인 발급 불가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(대리인 위임 불가)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“Y”로 설정하여 발급 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 ※ 인터넷청약(청약Home)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(군복무기간 명시)
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	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	
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	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	
	○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		
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		
	○	복무확인서			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본인 또는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※ 단,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/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/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/ 차권자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약서 등의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	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·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/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 등(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증명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
	○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(단신부임)	세대원	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/ Fax수신문서 제출가능) / ※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,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참고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/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함함(출산예정일, 질병코드번호, 담당 의사명,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신장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•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(배우자가 없는 경우)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‘미혼인 자녀’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	
	○	소득증빙서류	세대원		
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	
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	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배우자		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세대원		
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세대원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주민등록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※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기록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·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 (당첨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/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,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자
	○	위임장	본인 (당첨자)		
	○	신분증	대리인		

※ 상기 제3자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9.20.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

소득구분	비율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생아우선공급, 우선공급	130% 이하	~9,105,862원	~10,723,007원	~11,407,592원	~12,432,267원	~13,456,941원	~14,481,615원
신생아일반공급, 일반공급	130% 초과 160% 이하	9,105,863원 ~11,207,214원	10,723,008원 ~13,197,547원	11,407,593원 ~14,040,114원	12,432,268원 ~15,301,251원	13,456,942원 ~16,562,389원	14,481,616원 ~17,823,526원
추첨공급 1인 가구	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
	160% 이하	~11,207,214원	~13,197,547원	~14,040,114원	~15,301,251원	~16,562,389원	~17,823,526원
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

*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[1인당 평균소득(788,211) * (N-8), 100% 기준] ※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*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 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).

*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*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*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.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	①,②,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'주(현)'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신규취업자: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(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, 직인날인 필수) 계속근로자: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④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종합소득세 미신고자)	①,② 해당직장 ③,④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	① 등기소 ②,③ 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[국민연금 미가입자]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/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 날인)	①,② 해당직장/세무서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일용근로소득자	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세무서/해당직장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	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

■ 자산보유기준(소득기준 초과자)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건축물	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tr> <th>주택</th> <th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h> <th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
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
	주택 외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	토지		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조지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가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종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										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9.20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*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「직인날인」 필수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)

*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